

의안번호	2205292
의 퇴 인	김윤의원
회 답 일	2025.01.09.
추계번호	24C49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7조의4 (거짓 정보 제공 금지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1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함.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제2항) -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기준, 방법 및 협조의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함 (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7조의4 (거짓 정보 제공 금지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거짓 정보 제공 금지 등(안 제57조의4)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매체의 건강관리 거짓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의료광고 심의는 동법 제57조¹⁾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²⁾, 이

1)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 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없음
- 개정안은 의료광고 외에도 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를 포함한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 건강관리 거짓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전담 조직 신설 또는 위탁기관 예산 지원 등에 수반되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은 모니터링의 기준, 방법 및 협조의 내용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모니터링과 현행법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 및 모니터링과 구조적 차이가 있으며, 모니터링만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산출하기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
-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3. 전광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 2)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에서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